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

구 미 시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

제출년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건축한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구미소방서를 신축하여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의 훈련장 및 시민 소방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019. 3월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의결받았음.
- 이에, 건축주인 경상북도가 구미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구미소방서 신축부지(시유지)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상토지 : 구미시 공단동 206, 209-1번지(대지, 8,429㎡)
- 건축주 : 경상북도
- 건축현황
 - 구미소방서 : 지하1층, 지상3층(1동) / 연면적 5,196㎡
 - 다목적훈련탑 : 지상5층(1동) / 연면적 264㎡(소방안전교육장 포함)
- 건축비 : 129억원(도비)
- 건축기간 : 2020년 ~ 2022년

3. 근거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위 치 도

○ 소재지 : 구미시 공단동 206, 209-1번지

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10. 생략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생략

소관 실·과		회 계 과
입 안 자	과 장	강 신 석
	담 당	황 진 균
	담 당 자	전 유 향 (480-5072)